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가합519771 판결 [주식매수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이권호

피고1. B

2. 주식회사 C

3. 주식회사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유진영, 차성원, 김호철, 이현주

변론 종결2019. 11. 28.

판결 선고2020. 1. 16.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게임 사업 등을 영위하는 일본 소재 주식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연예 매지니먼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방송프로그램 및 음반 제작업, 연예 매니지먼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피고 C의 사내이사이자 최대주주이고, 피고 E는 피고 D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피고 C, B은 2018. 3. 5. 원고가 피고 C의 주식을 인수하는 내용의 보통주식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보통주식 인수계약서는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2018. 2. 7. 체결되었다.

1. 원고(이하 "인수회사")
2. 피고 C(이하 "발행회사")
3. 피고 B(이하 "이해관계인")

제9조(본건 주식의 발행 및 인수대금 납입)

- ① 발행회사는 액면가 10,000원인 본건 주식 10,000주를 1주당 발행가 350,000원으로 발행하여 인수회사에게 배정한다.
- ② 인수회사는 발행회사가 배정한 제1항의 본건 주식을 인수하며, 본건 주식의 인수대금의 합계는 3,500,000,000원으로 한다.
- ③ 발행회사는 인수회사가 본건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인수회사는 그 절차에 따라 인수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후행조건)

① 발행회사는 다음 각목에서 정한 후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수회사의 한국지사 대표이사 G을 발행회사 및 피고 D의 사내이사로 선임할 것
2. 발행일로부터 즉시 별지2의 H 지원안을 실행할 것
3. 별지2의 H 지원안을 바탕으로 인수회사의 한국지사가 운영하는 H 서비스의 2018년 8월 말 기준 월 매출(부가가치세와 플랫폼 수수료 30% 제외)이 1억 원을 달성할 것

② 인수회사는 다음 각목에서 정한 후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해관계인을 인수회사의 한국지사 사외이사로 선임할 것

11. Conditions subsequent

① Issuer shall fulfill the following conditions subsequent;

- 1) Employ the CEO of Subscriber's Korean branch, G, as an inside executive director of Issuer and D.
- 2) Execute the support plan for H of Annex 2. immediately after the Date of Issue.
- 3) Subscriber's Korean branch accomplishes the monthly sale amount of 100,000,000korean won (exclusive of value added tax and platform loyalty of 30%) of its Hat the end of August 2018 based on the support plan of Annex 2.

② Subscriber shall fulfill the following condition subsequent;

- 1) Employ Interested Party as an outside independent director of the Korean branch of Subscriber.

제12조(후행 조건의 미달)

발행회사가 본 계약의 제11조 제1항의 후행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인수회사가 제9조에 의해 매입한 주식의 가격으로 인수회사로부터 본건 주식을 모두 인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항의 3번째 조건의 달성 여부는 발행회사가 제출한 8월말 결산자료로 확인한다. 결산자료 확인 후 후행조건 미달시 이행관계인은 인수회사가 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제14조(손해배상)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4. Damages

A party who breaches this Agreement, and causes damages to the other parties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compensation of the damages.

다. 원고, 피고 C, 원고의 한국지사인 주식회사 I, 피고 D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최우선적으로 보완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당사자간의 의무와 권리를 정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E는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원고

을 : 피고 C

병 : 주식회사 I

정 : 피고 D

제3조 책임

정은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에 의거한 내용을 인지하고, 을의 계열사로서 을과 연대하여 금전적 책임에 대한 공동의 의무가 있다. (후략)

제4조 기타사항

본 합의서의 제3조를 보완하기 위해, 정의 대표이사 E가 연대하여 그 책임을 다한다.

라. 원고의 한국지사가 운영하는 H의 2018년 8월 매출(부가가치세와 플랫폼 수수료 30% 제외)은 1억 원에 미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0. 2. 피고 B에게, 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매입한 피고 C 주식 10,000주를 원고로부터 1주당 발행가 350,000원에 매입할 것, ② 피고 B와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제1항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것, ③ 피고 D는 주식 또는 자산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것, ④ 피고 E는 연대보증 의무를 이행할 것 등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한국지사가 운영하는 H의 2018년 8월 매출이 1억 원에 미달하여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후행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 제12조에 따라 원고가 매수한 주식의 대금 35억 원을 원고에게 주식인수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피고 D, 피고 E는 이 사건 계약 제14조, 이 사건 부속합의서 제3조, 제4조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주식인수대금 상당의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음에도 H 서버의 불안정, 시스템 과부하, 원고의 비협조 등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주장과 같은 원고측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납입의무 외의 원고의 의무는 제1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을 뿐, 제11조 제1항 제3호의 매출액 달성을 위한 원고의 지원이나 협조의무 등을 정하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조건 불성취에 따른 피고들의 책임은 원고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식인수대금 35억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9.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의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위 인정 범위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고종영

판사윤지상

판사김준영